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4. . . (제 회)	

지 적 재 조 사 에 관 한 특 별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책임수행기관이 지적소관청에게 위탁받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조사 등의 업무 중 일부를 대행하여 수행하는 자(이하 “지적재조사대행자”라 한다.)가 사업지구 내 토지등에의 출입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에서 규정한 업무 대행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395호, ‘24.3.19. 공포, ‘24.9.20. 시행)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책임수행기관이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조사 등의 업무 중 지적재조사대행자에게 대행할 수 있는 조문은 삭제하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4항에서 위임한 지적재조사대행자의 업무에 대한 조문의 자구 수정(안 제4조제3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책임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조사 등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를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측량·조사 위탁에 관한 고시 등) ①·② (생략) ③ <u>책임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조사 등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u>	제4조(측량·조사 위탁에 관한 고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1.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현황조사 및 토지현황조사서 작성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측량 중 경계점 측량 및 필지별 면적산정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계점표지 설치 ④·⑤ (현행과 같음)
④·⑤ (생략)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연락처	(044) 201 - 4659